

울산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1가단1252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9. 27.

판 결 선 고 2022. 1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3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A에 대한 채권

- 1)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라고 한다)은 2018. 2. 13. A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부담할 대출 원리금의 상환 채무에 대하여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 2) 한편, 2020. 1. 9. A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20. 3. 25. 기업은행에게 9,078,045원을 대위변제하였다(경남신보의 A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A의 아파트 분양권 양도

- 1) A은 2016. 12. 3. 경남 양산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아 계약금으로 20,835,600원을 지급하였다.
- 2) A은 2019. 10. 29.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중도금 대출금 125,013,600원을 승계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위 분양권을 무상 양도하였다.

다. 피고와 A의 금전거래

- 1) 피고는 2018. 11. 10. A으로부터 '사천만 원을 지원받아 2019. 6. 30.에 변제하고, 이자는 팔십만 원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 2) 또한 피고는 2018. 12. 15. A으로부터 '이전금액과 현재금액 총 팔천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이자는 1월부터 일백오십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 3) A은 피고에게 2019. 11. 13. 1,600만 원, 같은 달 19. 53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 4) 또한 A은 2019. 11. 13. F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A에 대한 파산 선고 및 원고의 소송수계

- 1) 경남신보는 2021. 1. 27.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2) A은 울산지방법원 2020하단371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21. 1. 11. 10:00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원고는 2021. 8. 24. A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한 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호증, 을 제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무상 양도하고, 금전을 송금(내지 채무를 변제)한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소정의 부인권 대상이 되는 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분양권의 계약금에 해당하는 20,835,600원과 피고가 A으로부터 송금 받은 31,300,000원을 합한 금액인 52,135,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A에게 대여한 80,000,000원의 변제조로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 및 3,1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A의 일반재산이 감소하여 변제 자력이 부족해져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룬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 한한다.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나. 고의부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가 없고(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등 참조), 행위 당시 자산초과상태였다 하여도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재원이 공익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 그리고 그러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이상,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다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배당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7, 8, 9,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 및 금전 송금 당시 파산채무자 A이 이미 채무초과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파산채무자인 A이 위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채권자인 피고에게 변제하는 행위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당시 선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A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 및 금전 송금 직후인 2019. 11. 26.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

1) 부인권 행사의 효력 발생 시기는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고,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한 다음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43999판결 참조).

2) 피고가 원고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합계 52,135,600원(= 20,835,600원1) + 16,000,000원 + 5,300,000원 +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2,135,6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인의 의사표시를 담은 원고의 2021. 9.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1.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형석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권은 A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가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고 양수 받았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계약금을 피고가 변제받은 금액으로 본다.